

배포 일시	2022. 5. 30.(월)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	책임자	팀 장	조은혜 (044-201-476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진 (044-201-4872)
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팀 장	황기현 (02-3145-8880)
		담당자	수 석	김혜리 (02-3145-8715)
	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	책임자	부 장	안성준 (02-3702-8584)
		담당자	팀 장	이용섭 (02-3702-8650)
보도일시	2022년 5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0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

허위·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

-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...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금융감독원(원장 정은보)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,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·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·관 합동점검(이하 합동점검, '22.6~10)을 실시한다.
-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,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·과다입원환자(속칭 '가짜환자')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,
-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·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*를 집중 점검한다.

* 입원환자 외출·외박 기록·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, 외출·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

- '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, 외출·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, 허위·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.

* 입원환자 부재율(%) : ('19)4.8 → ('20)4.8 → ('21)4.5

외출·외박 기록·관리 의무 위반율(%) : ('19)35.6 → ('20)33.8 → ('21)38.1

-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, 높은 입원을 등 문제 병·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,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·의원,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·의원 등을 포함한다.
-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·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,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.
- * (과태료 부과 기준)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(200만원)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
-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‘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,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’라는 기조 아래,
-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참고1**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관련 통계****1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실적**

(단위 : 개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소계
대상병원	538	577	556	1,671
점검병원	503	557	541	1,601
미점검병원 ^{주)}	35	20	15	70

주) 직원 부재, 입원실 폐쇄, 폐업, 휴업 등의 사유로 미점검

2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

(단위 : 개, %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소계
점검병원(A)	503	557	541	1,601
위반병원(B)	179	188	206	573
위반율(B/A)	35.6	33.8	38.1	35.8
과태료 부과병원(C)	13	14	9	36
과태료 부과율(C/A)	2.6	2.5	1.7	2.2

3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소계
환자 수(A)	4,164	4,866	3,260	12,290
부재환자 수(B)	201	234	146	581
부재율(B/A)	4.8	4.8	4.5	4.7

2022년

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
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



자동차사고 허위·과다 입원

OUT!

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,
자배법 준수!

- 점검근거**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(입원환자의 관리 등)
 - 점검기간 및 지역** 2022. 6월 ~ 10월 / 전국일원 230개 지역(수시 점검)
 - 점검내용**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2조
(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)
 - 과태료**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보험사기 신고방법**

 - 금융감독원 : 전화 1332 / 사이트 홈페이지 <http://www.fss.or.kr> 접속 후 "보험사기 신고" 클릭
 - 보험회사 홈페이지(보험범죄신고센터)

*처벌 : 10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*신고포상금 : 최대 10억

